

창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0851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60851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384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륜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률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5. 19.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384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제6쪽 제2~3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치고, 제5쪽 제20행과 제21행(마지막 행) 사이에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상제

판사장우영

판사진민희